

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

(의안번호 제719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1. 11. 15

고성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01. 11. 15

다. 상정·의결일자 : 2001. 11. 21

총무위원회 상정·보류

2. 제안사유

고성읍사무소 이전신축

-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하여 노후화 된 읍사무소를 1호광장 주변으로 이전하여 주민편익 및 도심 균형발전을 기여하고자 함.

공유재산 매각

- 현 고성읍 성내리 323-1번지 군수관사 및 고성읍 성내리 27번지 현 고성읍사무소를 매각하여 읍사무소 이전 신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고성읍사무소 이전신축

- 위치 : 고성읍 기월리 653-7번지 외 4필지
- 면적 : 토지 5필지 5,195㎡, 건물 1동 1,500㎡
- 재산가액 : 2,200,000천원

공유재산 매각현황

- 군수관사
 - 소재지 : 고성군 고성읍 성내리 323-1번지
 - 면적 : 토지 605.0㎡, 건물 201.13㎡
 - 재산가액 : 400,000천원
 - 매각시기 : 2002년 상반기

○ 고성읍사무소

- 소재지 : 고성군 고성읍 성내리 27번지
- 면적 : 토지 1,499.0㎡, 건물 942.96㎡
- 재산가액 : 1,800,000천원
- 매각시기 : 읍사무소이전 신축 완료 시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금번 제출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현 군수관사와 고성읍사무소를 매각하여 그 매각한 재원으로 노후화 된 읍사무소를 이전 신축하려는 것으로서
- 현재의 읍사무소는 협소하고 노후화 되어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를 투자하여도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짐.
- 그러므로 읍사무소를 고성읍의 중앙지점인 1호 광장 주변으로 이전하여 도심 균형발전을 유도함과 아울러 읍 중심지의 만성적인 주차 난을 해소 함은 물론 앞으로 운영할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기하고 주민편의 증진을 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
-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의 불만과 군민의 여론 등이 부정적일 수도 있으므로 다양하게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전에 따른 장·단점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짐.
- 그리고 이전 신축비용 22억원의 재원확보를 위해 군수관사와 현재 사용 중인 읍사무소를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도 있으나, 동 공유재산은 고성읍의 중심지역에 위치함으로써 향후 재산적 보존가치가 충분함으로 군민의 편의증진(종합사회복지관 등)을 위한 다른 용도로 활용할 방안을 강구하여 계속 공유재산으로 보존하는 것이 실익이 클 것으로 예측됨.
- 따라서 이전 신축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한다거나 구 체육관 등 실효성 없는 공유재산을 과감히 매각하는 방법 등 다각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보았는지 등에 대하여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고성읍사무소 이전은 고성읍민의 관심사항이므로 심도 있게 심사 하여야 할 문제이므로 고성읍민의 의견을 수렴 후 심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
- 답 : 고성읍에서 2회에 걸쳐 이동장회의 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,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음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2001. 11. 21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읍민의 의견을 수렴 후 다음 회기에 상정하기로 하고 심사 보류함.